

건설산업 기본법령상의 벌칙②

자료제공 / 건설경제

건설업체가 불법·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.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.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. [편집자 주]

위반사항	근거조항	처벌내용
■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○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	법 제38조 법 제81조제5호 법 제82조제1항제4호	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
■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○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	법 제40조제1항 법 제81조제6호 법 제82조제1항제4호 법 제97조제2호	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*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■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되는 공사를 도급받을 때	법 제47조제2항법 제82조제2항제4호	* 영업정지 6월 또는 도급금액 24/100 이하 과징금
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위반행위 ○ 실태조사 또는 검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○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, 기피, 방해 등을 하거나 위 보고를 한 자 ○ 실태조사 또는 검사보고를 태만히 한 자	법 제49조제1항 법 제99조제8호 법 제81호제7호 법 제82조제1항제4호 법 제100조제3호	* 과태료 150만원 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* 과태료 30만원
■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2호	* 영업정지 4월
■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83조제18호	*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

■ 알기쉬운 벌칙규정②

위반사항	근거조항	처벌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	법 제83조제10호	*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	법 제82조제1항제5호 가목	*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	법 제82조제1항제5호	*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	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	*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한 때 	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목	*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	법 제83조제7호	* 등록말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, 검사,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	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	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명 이상 사망한 때 ○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○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	법 제82조제1항제6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영업정지 5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*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실시공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과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○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과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인이상 사망한 때 ○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과를 야기하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○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○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○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 제83조제9호 법 제82조제2항제5호 법 제82조제2항제5호 법 제82조제2항제5호 법 제82조제2항제5호 법 제82조제2항제5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*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*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3억원 *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2억원 *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1억원 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

위반사항	근거조항	처벌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주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-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-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한 경우 -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	법 제93조제1항 법 제93조제2항 법 제94조제1항 법 제94조제2항	* 10년 이하 징역 *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* 5년 이하 징역 및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* 10년 이하 징역 및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찰질서 문란행위 ○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○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○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한 자 	법 제95조	*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 제41조(건설공사의 시공자의 제한)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	법 제41조 법 제96조제6호	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업의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	법 제17조제1항 법 제96조제3호	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	법 제82조 법 제83조 법 제96조제7호	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(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) 	법 제29조의2제1항 법 제99조제6호	* 과태료 15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출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	법 제31조의2 법 제99조의제7호	* 과태료 3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	법 제40조제2항 법 제100조제2호	* 과태료 3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	법 제9조의2제2항 법 제100조제1호	* 과태료 5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	법 제42조제1항, 제2항 법 제100조제2호의2	* 과태료 50만원

위반사항	근거조항	처벌내용
<p>■ 양벌규정</p> <p>○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</p> <p>- 단,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제외</p> <p>○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, 제95조, 제95조의2,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 및 제1호의 2 및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</p> <p>- 단,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제외</p>	법 제98조	



무한지식

양치질 후에 과일을 먹으면 왜 맛이 없을까?

딸기, 귤, 복숭아, 포도…… 모두 달콤한 과일이지만 그 맛이 맥을 못 출 때가 있다. 바로 양치질을 한 직후에 과일을 한 입 베물었을 때다. 달콤상콤한 과일맛은 온데간데없고 텁텁한 맛, 쓴맛, 신맛이 뒤죽박죽된 것 같은 그 맛이구나! 누구나 한두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.

도대체 그 맛있는 과일이 왜 그렇게 끔찍한 맛으로 돌변하는 것일까? 비밀은 우리의 혀에 숨어 있다 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돌도돌 작은 돌기가 수없이 솟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것을 미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맛을 느끼게 된다. 이 미뢰 속에는 맛을 감지하는 미세포가 있다. 미세포는 보통 열혈에 한 번 새롭게 교체되는데 그만큼 늘 신선하게 깨어 있는 감각을 유지하게 된다. 그런데 양치질을 하면서 치약을 쓰게 되면 미세포가 있는 미뢰에 대혼란이 일어난다.

치약에는 치아의 표면을 깎아내는 연마제, 거품을 풍성하게 만드는 발포제, 치약이 딱딱하게 굳는 걸 방지해주는 습윤제, 구취예방제, 미백제 등 수많은 성분과 함께 치약의 맛을 좋게 해주는 향미료와 감미제까지 들어있다. 양치할 때 거품이 나는 것은 계면활성제 때문인데, 양치 또한 세척

작업의 하나이므로 통상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다. 그런데 바로 이 계면활성제가 양치 후 과일 맛을 쓰거나 텁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. 이러한 계면활성제는 잇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. 통계적으로 현대인이 소금으로 이를 닦던 시대보다 충치나 풍치 발생률이 높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.

이렇게 수많은 화학물질이 치약 속에 가득하다 보니, 미뢰의 감각이 뒤죽박죽되어 양치질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제 맛을 느낄 수 없게 된다. 특히 치약의 불소 성분은 과일에 들어 있는 산과 반응해서 잠깐 동안 미각을 마비시키는 효과까지 있다.

그렇다면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? 왜 없겠는가!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다. 소금을 이용해 양치질을 하면 충치 예방에도 좋을뿐 아니라, 양치 후에도 과일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.

더 손쉬운 방법도 있다.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고 난 직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으면 된다.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순서가 중요하듯, 양치질과 과일 한 접시도 마찬가지다.

- 「정재승의 도전! 무한도전」 중에서